의안 번호	제2773호

2026. 10. 19.(월) 10:00
제38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○ 안건 : 1건(개정안)

의회운영위원회

전문위원 기은자

1 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773호

○ 발의일자 : 2026. 10. 6.

○ 발 의 자 : 장성군의회의장(차상현의원 외1명)

○ 회부일자 : 2026. 10. 8.

2. 제안이유

○ 「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」 제5조제1항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대상의 인용 조문을 “제3조제1호“에서 “제3조 각 호“로 정비하여 조문 간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❍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(안 제5조제1항)

- (현행) 의회는 제3조제1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(이하 “인사청문 대상자” 라 한다)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- (개정) 의회는 제3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(이하 “인사청문 대상자” 라 한다)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

4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「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」 제5조 제1항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대상을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**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후보자로 변경하여**, 인사청문 대상에 관한 규정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조문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,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의안 번호	제2786호 제2774호~제2783호

2026. 10. 20.(화) 10:00
제38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: 11건(승인1, 제정2, 개정8)

관광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기 은 자

목 차

□ 2026년도 관광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····· 3

□ 장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· 5

□ 장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····· 7

□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

□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

□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·····13

□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·····16

□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·····18

□ 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·····20

□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(가족행복과) ····· 22

□ 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····· 25

1 2026년도 관광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786호

○ 제출일자 : 2026. 10. 8.

○ 제 출 자 : 관광복지위원회

○ 회부일자 : 2026. 10. 8.

2. 제안이유

○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, 「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집행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과 군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관광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(안)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감사기간 : 2026년 제382회 제2차 정례회(9일 이내)

○ 대상기관 :「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규정된 기관

○ 대상사무 :「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규정된 사무

○ 감사방법

◦ 주요시설 대상지 현장방문

◦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· 답변을 통한 감사

◦ 제출된 자료 확인 및 증인 등 증언 청취를 통한 감사

○ 주요 감사 내용

◦ 예산집행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

◦ 각종 인·허가, 민원처리, 의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

4. 관련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

○ 「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

5. 검토의견

❍ 본 계획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, 계획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❍ 현장방문, 업무보고 청취 및 제출자료 확인 등을 통해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,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·개선을 요구하여 군정 발전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2 장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774호

○ 발의일자 : 2026. 10. 7.

○ 발 의 자 : 최미화의원(가족행복과)

○ 회부일자 : 2026. 10. 8.

2. 제안이유

○ 장성군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적극 대응하고, 노인의 사회참여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안 제2조)

○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안 제4조)

○ 조성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안 제6조)

○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○ 위원회의 구성・임기・해촉・운영 및 위원장의 직무, 수당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안 제14조)

○ 교육・홍보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~안 제16조)

○ 운영세칙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~안 제18조)

4. 관련법령

○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의3

○ 「노인복지법」 시행령 제2조의2, 제2조의3, 제2조의4

5. 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 고령인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고령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,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❍ 조례안의 내용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, 관련 사업 추진, 민·관 협력 및 재정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·행정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.

❍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 없고, 다른 조례와의 충돌 및 조문 형식·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 발의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3 장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775호

○ 제출일자 : 2026. 10. 8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기획실장)

○ 회부일자 : 2026. 10. 8.

2. 제안이유

○ 공공조형물 설치 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심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안전한 유지 관리 도모

3. 주요내용

○ 제정 목적과 공공조형물 범위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
○ 공공조형물 설치(이전·교체·해체) 신청 및 기준 규정(안 제5조 ~ 안 제7조)

○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, 구성, 운영 방식 규정(안 제 8조 ~ 안 제11조)

○ 공공조형물 설치 처리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2조 ~ 안 제14조)

4. 관련법령

○ 해당없음

※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를 규율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은 없으며, 설치방법 · 설치장소 등에 따라 관계법령 적용 및 조례로 규정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,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안전한 유지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.

○ 특히 공공조형물의 설치·이전·교체·해체에 관한 기준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, 설치 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○ 따라서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4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776호

○ 제출일자 : 2026. 10. 8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총무과)

○ 회부일자 : 2026. 10. 8.

2. 제안이유

○ 2026년 기준인건비 및 기준인력 수시 통보에 따른 국가사업 등 정원 반영으로 업무부담 해소 및 조직 운영의 효율화 도모

3. 주요내용

○ **장성군 공무원 총 정원 : 735명 → 739명 (증 4명)**

○ **기관별 정원증원 내역**

(단위 : 명)

구분	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
현행	735	373	18	107	46	191
개정	739	377	18	107	46	191
증감	+4	+4	-	-	-	-

4. 관련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
○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(정원의 규정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기준인력 수시 통보에 따라 국가사업 및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인력 4명을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.

○ 증원 인력을 사회연대경제, 민원해결·갈등관리, 체납관리단 운영 및 햇빛소득 마을 관련 업무에 배치하는 것은 분야별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정원 증원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따라서 기준인력 통보에 따른 정원 반영의 필요성과 증원 분야 및 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5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777호

○ 제출일자 : 2026. 10. 8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총무과)

○ 회부일자 : 2026. 10. 8.

2. 제안이유

○ 첨단3지구 조성으로 행정수요가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출장소 설치

3. 주요내용

○ 진원면 출장소 설치 조항 신설(안 제6장 면출장소)

○ 「장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」에 규정되어 있던 군청 및 읍·면사무소 소재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이 조례로 이관·통합하고, 종전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 체계를 합리화(안 제25조)

4. 관련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
○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첨단3지구 조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진원면 출장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.

○ 또한 군청 및 읍·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로 이관·통합하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따라서 진원면 출장소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 조례의 통합·정비 등 주요 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6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778호

○ 제출일자 : 2026. 10. 8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민원봉사과)

○ 회부일자 : 2026. 10. 8.

2. 제안이유

○ 「건축법」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가설건축물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가설건축물 세부기준 변경(안 제26조제2항)

· 건축물의 지붕 누수 해결을 위한 비가림시설 추가

- (현행) 일반건축물 비가림시설은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
- (개정) 일반건축물 비가림시설은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 단, 건축물의 지붕 누수해결을 위한 비가림시설은 건축면적 이하

· 위생관련 가설건축물 추가

- (현행) 공용, 공공용의 위생관련(급수, 화장실 등) 건축물
- (개정) 공용, 공공용, 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 설치하는 위생 관련 건축물

· 간이저온저장고 기준 명확화

- (현행) 연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간이저온저장고
- (개정) 연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간이저온저장고
 (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농산물을 저장하는 목적의 저장용적 50㎥(바닥면적 10.56㎡) 이하인 저온저장기계는 제외)

○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위임사항 변경(안 제48조제1항)

- (현행)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1항
- (개정) 「건축법」 제61조제2항

○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(안 제48조제1항)

- (현행)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: 높이의 2분의 1 이상
- (개정)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: 5미터 이상
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: 높이의 2분의 1 이상

4. 관련법령

○ 「건축법」 제20조(가설건축물) 및 제61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「건축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가설건축물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건축행정 편의를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.

○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가설건축물 및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의 정비 등 주요 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7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779호

○ 제출일자 : 2026. 10. 8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관광과)

○ 회부일자 : 2026. 10. 8.

2. 제안이유

○ 재단의 정관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정관 작성 및 변경 절차 구분 정비(안 제5조제2항)

- (현행) 재단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, 그 결과를 장성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(개정) 재단의 최초 정관은 설립자가 작성하며,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결과를 장성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○ 개정 조례 시행 전 작성된 최초 정관에 대한 경과조치 및 군의회 보고 내용 추가(부칙 제2조 및 제3조)

4. 관련법령

○「민법」 제43조(재단법인의 정관)

○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(정관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관광문화재단의 정관 작성과 변경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, 조례 시행 전 작성된 최초 정관에 대한 경과조치 및 군의회 보고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.

○ 최초 정관은 설립자가 작성하고, 변경 시에는 군수와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구분하며, 기존 정관에 대한 경과조치와 군의회 보고절차를 마련한 것은 정관의 작성·변경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따라서 정관 작성·변경 절차의 명확성과 경과조치 및 의회 보고사항 등 주요 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8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780호

○ 제출일자 : 2026. 10. 8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주민복지과)

○ 회부일자 : 2026. 10. 8.

2. 제안이유

○ 고향사랑 기금을 활용한 “찾아가는 이불빨래방” 설치·운영에 따른 “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제공 근거” 마련

○ 타 조례·법령에 따라 수행 중인 사업 관련 규정을 본 조례에서 삭제·정비

3. 주요내용

○ **인용된 상위법 제명 변경**(안 제2조의제13호)

※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→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○ **안 제6조(지원내용)을 체계에 맞게 정비,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사업 신설**

- 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이미 시행 중인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항목은 중복 규정 해소 및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삭제
- 제15호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지원사업 신설

○ **별표 수정** : 안 제6조 개정사항 반영하여 수정

4. 관련법령

○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4조제1항(사회복지서비스 증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세탁서비스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,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지원사업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함.

○ 다만, 수학여행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본문과 별표의 지원대상 용어가 상이하므로 실제 지원대상에 맞게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, 안 제6조제12호의 지원내용 변경에 따라 별표의 지원대상 인용 조문도 이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○ 따라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9 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781호

○ 제출일자 : 2026. 10. 8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주민복지과)

○ 회부일자 : 2026. 10. 8.

2. 제안이유

○ 상위법인 「청소년 기본법」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인용 조문과 용어·표현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수정하여 조문의 명확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

: 청소년육성위원회 → 청소년정책위원회

○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내용 정비

4. 관련법령

○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1조(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)

○「청소년 기본법」 제27조(청소년지도위원)

5. 검토의견

❍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청소년 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, 위원회의 기능을 전환(자문→심의)하는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.

❍ 다만, 「청소년 기본법」에서 **위원회를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규정**하고 있고, **위원회의 기능이 '자문'에서 '심의'로 강화**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 직위를 국장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❍ 또한,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면서 **기획·예산 업무 담당 부서를 제외하는 것이** 청소년정책의 시책·예산 연계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0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782호

○ 제출일자 : 2026. 10. 8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주민복지과)

○ 회부일자 : 2026. 10. 8.

2. 제안이유

○ 장난감도서관·키즈카페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들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여성회관이 가족행복센터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통폐합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

3. 주요내용

○ <제1장> 총칙 및 일반운영

- 정의, 시설, 운영시간,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안 제4조, 안 제6조, 안 제7조)
- 이용료, 수입처리에 관한 사항(안 제9조, 안 제11조, 안 제13조)

○ <제2장>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

- 이용대상과 이용자의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 ~ 안 제14조)
- 안전관리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 ~ 안 제16조)

○ <제3장> 장난감도서관 운영

- 장난감도서관 기능 및 회원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 ~ 안 제21조)
- 대여 및 반납과 연체료, 연회비,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22조 ~ 안 제26조)
- 기증,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27조 ~ 안 제29조)

○ <제4장> 장성군 여성회관 운영
 - 여성회관 업무, 교육의 운영, 강사위촉에 관한 사항(안 제30조 ~ 안 제32조)

4. 관련법령

○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조, 제4조
○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
○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7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장난감도서관과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, 여성회관 관련 규정을 통합·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 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○ 주요 내용은 센터 시설의 이용 및 이용료,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운영과 안전관리, 장난감도서관의 회원관리·대여·반납·연체료 및 변상조치, 여성회관의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임.

○ 다만, 안 제27조제1항은 대여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·파손한 경우 동일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물품으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 현금 변상 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변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○ 따라서 안 제27조제1항의 변상조치 규정을 명확히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1 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783호

○ 제출일자 : 2026. 10. 8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가족행복과)

○ 회부일자 : 2026. 10. 8.

2. 제안이유

○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임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법적 위임 근거 명시

- 안 제1조(목적) 조항에「의료 ·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명시
- 안 제11조(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) 조항에 법 제20조제1항 명시

○ 보건복지부 「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」에 따라 조례 정비

- 안 제4조제3항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계 의무 사항 반영
- 안 제5조제1항제10호 통합지원 사업 내용 관한 사항 신설
- 안 제6조(개인별 지원계획 수립) 신설

- 현행 제10조(통합지원협의체) 조항 삭제(상위법에 이미 규정된 사항의 단순 재기재)
- 안 제11조제3항제4호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관한 내용 신설

4. 관련법령

○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「의료・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,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.

○ 특히 지역보건의료계획과의 연계, 통합지원 사업의 범위 확대,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대상자의 개별적인 돌봄 필요도에 따라 의료・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따라서 상위법령의 시행에 따른 조례 정비의 필요성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의안 번호	제2784~제2785호

2026. 10. 21.(수) 10:00
제381회 임시회 제1차 건농위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: 2건(조례안1, 개정조례안1)

JANGSEONG COUNTY COUNCIL
장성군의회

건설농정위원회

목 차

□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····· 3

□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····· 5

1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784호

○ 제출일자 : 2026. 10. 8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인구경제실장)

○ 회부일자 : 2026. 10. 8.

2. 제안이유

○ 장성군 청년상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상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○ 청년상가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○ 청년상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
○ 사용·수익허가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0조)

○ 사용료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○ 사용허가 취소 및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~제16조)

4. 관련법령

○ 「청년기본법」 제18조(청년창업 지원)

5. 검토의견

○ **본 조례안**은 청년상가의 체계적인 운영·관리를 통해 청년의 자립과 지속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고,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**주요 내용**으로는 청년상가의 설치 및 운영·관리, 사용허가 및 사용료, 사용허가 취소와 배상책임, 사용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체계성이 인정되며,

○ **근거법령 및 제정의 필요성·타당성** 등을 검토한 바, 청년 창업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2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785호

○ 제출일자 : 2026. 10. 8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농산유통과장)

○ 회부일자 : 2026. 10. 8.

2. 제안이유

○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갱신 부담을 덜어주고, 품목 출하실적 보고주기를 반기별에서 연 1회로 조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○ 사용허가(안 제5조 5항)

○ 사용책임(안 제10조 3항)

○ 인용된 상위법 제명 변경 사항 반영

4. 관련법령

○ 「상표법」 제89조(상표권의 효력), 제91조(등록상표 등의 보호 범위) 등

○ 「친환경농어법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34조

○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5조(표준규격)

5. 검토의견

○ **본 일부개정조례안**은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 출하실적 제출주기를 완화하여 사용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,

○ **주요 내용**으로는 공동브랜드 **사용허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**하고, 출하실적 제출주기를 반기별에서 연 1회로 변경하며, 관련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인정되며,

○ **근거법령 및 개정의 필요성·타당성** 등을 검토한 바,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편의 증진과 행정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 다만, 공동브랜드 장기 사용허가에 따른 품질 관리 방안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